

1. 개정이유

국가수산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산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산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수산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6조의2)

- 1) 「수산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수산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수산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을 수산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에 관한 업무, 수산물질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수산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업무,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수산물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신고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차량출입정보의 수집·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3) 수산물질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국가수산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물질병의 예방과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3)

-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를 수산생물질병명, 질병 발생 국가명 및 지역명, 발생 일시 등으로 정함
- 3)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안 제14조, 제22조, 제35조 및 제40조)

-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변경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2)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검역시행장의 지정 신청 및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법률 개정 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3) 법률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법령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연구조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 절차 마련(안 제26조)

- 1) 시험·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

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허가에 관한사항만 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비되어 있음

2) 시험·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시험·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별표 4의2)

1)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의 관리기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한 감경처분 기준 등을 정함

3) 검역시행장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률의 집행력을 담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입위험분석 실시 기준 개선(안 제37조)

- 1) 수입금지 또는 수입중단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이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토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함
- 2) 새로운 수산생물이나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금지 또는 수입중단 해제 이후 국제기준이 변경되거나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3)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중단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수입중단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기한 단축(안 제37조의2제2항)

- 1)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 2)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하던 것을 1개월 이내에 발급하도록 함

- 3)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민원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아. 수산생물질병방역관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26호 서식)

- 1) 수산생물질병방역관증에 수산생물질병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여, 이를 거부
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업무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5. 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의 분리신고 및 수집·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조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수산생물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2. 법 제45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질병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질병명
2.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수산생물질병 발생 일시
4. 수산생물질병에 걸린 수산생물의 종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내발생 수산생물질병 : 국립수산과학원의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

2. 해외발생 수산생물질병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의 해외 수산생물질병 발생 정보

④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에게”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을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법 제20조제2항”을 각각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제1항제9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제28호제1항제11호”를 “제28조제1항제11호”로 한

다.

제35조의 제목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신청 등)”을 “(검역시행장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를 “수산물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를 “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을 “검역시행장을”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검역시행장 지정서”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을 “검역시행장을”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검역시행장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역장소를”을 “검역시행장을”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검역시행장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검역시행장의 지정 취소 등)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검역물이 아닌 수산생물이나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산생물질병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출국 정부기관 요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3. 수입금지 또는 수입중단 해제 이후 국제기준이 변경되거나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지정 또는 해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제6호·제7호,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 변경 여부
4.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 여부

제37조의2제2항 중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에서”를 “법 제40조제2항에서”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목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을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호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검역시행장 지정서”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검역시행장 지정서”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검역시행 장소명”을 “검역시행장 명칭”으로 하며, 같은 앞쪽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을 “검역시행장으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제30조제3항 단서 관련)

모 형	규 격	용 도	비 고
	지 림 바깥 원: 40mm 안의 원: 25mm 글자의 굵기 안의 원: 1mm 바깥 원: 1mm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결과표지 표시	

[별표 4의2]

검역시행장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때	법 제32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시설·장비 등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3)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32조 제6항제2호	업무정지 60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다.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2조 제6항제3호	지정취소		
라.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법 제32조 제6항제4호	지정취소		

(앞쪽)

제 호
수산생물방역관증
사진 (2.5cm×3cm)
성 명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56mm×80mm [백상지 80g/㎡]

(뒤쪽)

수산생물방역관증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직인
1. 이 증표를 지닌 자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 5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국가수산물방역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u> <u>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5조</u> <u>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물</u> <u>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u> <u>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u> <u>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u> <u>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u> <u>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u> <u>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u> <u>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u> <u>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u> <u>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u> 1. <u>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u> <u>수산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u> <u>견을 위한 신고</u> 2. <u>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u> <u>수산물질병별 긴급방역대책</u> <u>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u> 3. <u>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u> <u>수산물질병의 방역에 관한</u> <u>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업</u> <u>무</u> 4. <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성</u>

<신 설>

감정 결과의 보고

5. 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의 분리신고 및
수집·보존·관리에 관한 업
무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량
출입정보의 수집·유지·관리
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전염
병의 예방과 방역조치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
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
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 ① 법 제6조
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수산생물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
염병

2. 법 제45조에 따른 수산생물
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
질병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
물질병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
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질병명

2.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국가
명 및 지역명

3. 수산생물질병 발생 일시

4. 수산생물질병에 걸린 수산생
물의 종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하는 정보의 출처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내발생 수산생물질병 : 국
립수산과학원의 역학조사·정
밀검사 결과

2. 해외발생 수산생물질병 : 세
계동물보건기구(OIE) 등의 해
외 수산생물질병 발생 정보

④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
보공개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

	<u>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u>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생 략)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9조제1항</u> 단서에서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u>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u>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u>국립수산과학원</u> <u>장에게</u> 제출하여야 하며, <u>국립수산과학원장은</u>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 ----- <u>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에게</u> --- <u>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u> ---.
③ <u>법 제20조제2항</u> 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	③ <u>법 제20조제3항</u> ----- ----- -----

수산물에 대하여 한다.	----- --.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 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 ----- ----- ----- ----- -----.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 · 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0조제3항-----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① ~ ⑤ (생 략)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그 밖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조사용 또는 수산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② -----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제28호제1항제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② ~ ④ (생략)

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제1항 제9호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제28조제1항제11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검역시행장의 지정신청)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하는 때에
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
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받
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
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
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
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원본
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 지원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
한 경우 그 검역장소를 확인하
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
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에 변
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
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의 시설 기준 및 지

----- 검역시행장
을 -----

----- 검역시행
장 지정서-----
-----.

④ ----- 검역시행장을 -

----- 검역시행장 지
정(변경)신청서-----
----- 검역시행
장 지정서 -----

--.

⑤ -----

----- 검역시행장을 -----
----- 검역시행
장 지정서-----

--.

⑥ -----
----- 검역시행장---

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신 설>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
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질병이 수입
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

-----.

제35조의2(검역시행장의 지정 취
소 등)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
의2와 같다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

-----.
-----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

1. 지정검역물이 아닌 수산생물
이나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
정되지 아니한 수산생물질병

된 경우

2. 특정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자주 발견된 경우

3. 특정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새로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② (생략)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2조, 제14조의2,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 변경 여부

2. 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3. (생략)

<신설>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출국 정부기관 요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3. 수입금지 또는 수입중단 해제 이후 국제기준이 변경되거나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법 제2조제6호·제7호,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 변경 여부

2. -----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 지정 또는 해제 -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 여

④ (생 략) 제37조의2(수산물질병관리사 면허 증의 발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날부터 <u>2</u> <u>개월</u> 이내에 법 제37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를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의2서 식의 수산물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수산물용의약품 등의 사 용제한) ① <u>법 제40조에서</u> “해양 수산물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 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해를 말한다. 1. 2. (생 략) ② (생 략)	<u>분</u>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수산물질병관리사 면허 증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u> <u>개월</u> ----- ----- ----- -----. 제40조(수산물용의약품 등의 사 용제한) ① <u>법 제40조제2항에서</u>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